

2021 임시 자연대 학생대표자 회의

2021년 12월 20일 21:00

Zoom



2022 자연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2021 임시 자연대 학생 대표자 회의 자료집 - 목차

사전 의결안건

1. 자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통과안건

1. 대의원 확정
2. 안건 제목 및 진행순서 확정
3. 안건 채택

보고안건

없음.

인준안건

1. 2022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준
2. 과학봉사단 기획단 및 새내기배움터 기획단 특별기구 승인

심의안건

없음.

별첨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전문

사전 의결안건 1. 자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 자학대회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연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시행세칙

일부 개정 2018. 11. 26

제1조 (시행세칙)

- ①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연대 학생회칙 제3장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자학대회")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본 시행세칙은 자학대회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효된다.
- ③ 본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본 시행세칙은 자학대회 회기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 ⑤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 (회의진행과 관련된 원칙)

- ① 자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1. 회의공개의 원칙 : 안건 공고, 방청 공개, 공개토론, 공개표결, 회의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단, 회원 징계에 대한 의사 진행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발언자유 원칙 : 자학대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3. 다수결의 원칙
 4.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5. 일의제의 원칙 :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즉, 회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토론과 의결을 거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에 대해서 선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6. 일사부재의의 원칙 :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단,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다. 번안이 통과되면 다시 표결에 부친다.

② '회의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의에서 찬반만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전의 준비과정(자신이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하여 다른 대의원들에게 동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자학대회는 결정의 자리이기에 자유토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제3조 (회의용어)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기(會期)"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開會)"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3. "개의(開議)"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자연대 학생회칙에서는 자연대 학생회장 탄핵안의 경우에 '개의'를 제한하고 있다.
4. "폐회(閉會)"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5. "산회(散會)"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6. "휴게(休憩)"란 하루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한다.
7. "정회(停會)"란 하루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선포 시, 대의원들은 회의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8. "휴회(休會)"란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말한다.
9. "속개(續開)"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10. "독회(讀會)"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안에 대해서 제1독회에서 의안의 발제와 질의를 다루고, 제2독회에서 제1독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안을 축조심의 및 수정을 하고, 제3독회에서는 총괄 심의와 의안에 대한 채택을 하여 이후에 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독회 사이에 휴게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4조 (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대별된다.

의안(議案)은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으로서 회순 중에서는 논의 및 의결안건을 지칭한다.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에 상정된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부, 산하기구 등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이 아니다. 의안은 제출되는 안건과 달리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반대/기권의 표결로 자학대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은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이다.
2. 수정안은 원안을 추가,삭제,변경한 의안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3. 이견안은 동일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이다.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제5조 (발언)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의장은 신상발언,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 질문발언, 찬반발언의 순서로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②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상발언 : 자신의 신상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이다. 속기가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다른 대의원이 왜곡하여 발언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규칙발언 : 회의 진행이 자연대 학생회칙, 자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이다.
3.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4. 질문발언 :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이다.
5. 찬반발언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발언이다.

③ 발언자는 소속, 성명, 발언의 종류, 발언의 요지를 먼저 밝히고 부연설명을 한다.

④ 발언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안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안건에 대한 발제는 20분 이내로 한다.
2.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한다.
3. 기타 발언은 3분 이내로 한다.

⑤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⑥ 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한한다.

제6조 (의장 및 의사조정위원회)

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② 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물었을 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이의를

표명하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야한다.

- ③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휴계를 선포하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 ④ 의장은 회칙개정시 '개정', '신설', '문구수정', '삭제'와 날짜를 표기하여 폐회 후 2일 내 회칙 개정본을 작성·공고한다.
- ⑤ 의장은 자학대회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조사하고, 폐회 후 3일 내에 해당 대의원이 사유를 밝힌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첨부하여 폐회 후 5일 내에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대자보 및 온라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순서)

일반적인 회순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개회선언 (재적대의원 및 출석대의원 확인)
2. 대의원 확정 (대의원 추가 및 대행의 승인) : 재적대의원이 아니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자연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자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4. 보고안건
5. 인준 안건
6. 논의 및 의결안건
7. 심의 안건 (예·결산)
8. 기타 안건 (결의문, 선언문 통과 등)
9. 폐회 / 산회

제8조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 ①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 순서가 확정된다.
- ②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기각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분할처리 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소심의(逐條審議. 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개정을 다룰 때 쓴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축소심의(縮小審議.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이권이 있을 시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제9조 (안건제출, 의안발의, 안건상정)

- ①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특별기구는 자학대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은 자연대 학생회칙 제23조에 따라 자연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3일전까지,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동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운영위원회나 다음 자학대회로 이월한다.
- ④ 대의원은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대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 ⑤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은 의장이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 ⑥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각 호에 따른다.
 1.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2.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계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여 단일수정안을 상정한다. 만약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과 이견안을 함께 묶어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표결에 부친다.

제10조 (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 ①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 ③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단,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1조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 ① 찬반토론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② 발제자는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③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단,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2조 (표결) <개정 2018. 11. 25>

① 표결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단,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 제1호만 진행하고 표결을 박수로 갈음한다.

1. 의장은 카카오톡 자학대회방의 구성인원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확인한다.
2. 카카오톡 자학대회방 관리자는 표결을 위한 카카오톡 기명투표를 개설한다.
3. 투표가 개설되면 대의원은 의장의 선언과 동시에 투표한다.
4. 투표가 종료되면 카카오톡 자학대회방 관리자는 집계결과를 의장과 속기자에게 각각 전달한다.
5. 의장은 집계결과를 공고하고 집계결과의 속기 여부를 확인한다.

② 대의원은 투표 내용을 반복할 수 없다.

③ 인준 안건, 심의 안건, 총노선의 부결은 해당 안건을 다시 작성하여 다음 자연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이다.

제12조의2 (변안) <신설 2018. 11. 25>

①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안할 수 있다.

1.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2. 원안찬성/이견안찬성/기권의 선택표결로 진행한 결과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득표한 의안이 없을 경우

② 본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안이 통과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 제11조의 찬반토론을 거친 후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③ 본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의안에 대해 제11조의 찬반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제13조 (정족수 미달) <신설 2018. 11. 25>

① 회의 도중에 출석대의원 수가 개회 정족수 이하가 된 경우 의장은 즉시 휴게하고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② 의사조정위원회는 의사정족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에게 폐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폐회되더라도 그 전에 의결된 안건은 효력을 유지한다.

통과안건 1. 대의원 확정

물리천문학부(10인)	(정)유승우, (부)이원석, (18정)유종은, (19정)강민영, (20정)명하진, (20부)노진영, (21정)조재우, (21부)권준환 (천문학전공대표)정승호, (여학우대표)김다인
화학부(8인)	(정)김가영, (부)이준상, (18정)김수영, (18부)조형준, (19정)박강은, (19부)오현석, (21정)박인성, (21부)이채은
생명과학부(8인)	(비대위장)백준채, (18남대표)김윤혁, (18여대표)심민정, (19여대표)유채은, (20남대표)장성현, (20여대표)성은주, (21남대표)조현준, (21여대표)김보현
지구환경과학부(10인)	(정)오정민, (부)김세직, (18가)하동주, (18나)홍주민, (19가)민영은, (19나)최동린 (20가)양재혁, (20나)유형준, (21가)김민석, (21나)정태욱
수리과학부(6인)	(정)손현기, (부)김준수, (18학번대표)김민혜, (19학번대표)김수현, (20학번대표)김예찬, (21학번대표)강찬
통계학과(6인)	(정)김동원, (부)팽진호, (18학번대표)강민찬, (19학번대표)탁수연, (20학번대표)노현성, (21학번대표)유정훈
동아리연합회(8인)	(자연대축구부)김도균, (Photons)최주원, (자기연)이정빈, (BGM)김학진, (휴림)김정태, (LAB)김주호, (NaturalS)정재원, (BCSC)남명선

통과안건 2. 안건 제목 및 진행순서 확정

정족수 확인

개회선언

사전 의결안건

1. 자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통과안건

1. 대의원 확정
2. 안건 제목 및 진행순서 확정
3. 안건 채택

보고안건

없음.

인준안건

1. 2022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준
2. 과학봉사단 기획단 및 새내기배움터 기획단 특별기구 승인

심의안건

없음.

별첨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전문

통과안건 3. 안건 채택

인준안건 1. 2022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준

- 다음의 학우들을 해당 임기 동안의 2022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인준하여 주십시오.

임기	직책	성명	학번	학과·부
12/21 ~ 1/24	위원장	김가영	20학번	화학부
	부위원장	김동원	20학번	통계학과
1/25 ~ 2/28	위원장	오정민	20학번	지구환경과학부
	부위원장	백준채	19학번	생명과학부
3/1 ~ 보궐선거 종료	위원장	유승우	20학번	물리천문학부
	부위원장	백준채	19학번	생명과학부

인준안건 2. 과학봉사단 기획단 및 새내기배움터 기획단 특별 기구 승인

- 다음의 기구들을 자학대회 의장 직속의 특별기구로 인준하여 주십시오.

기구 명칭	단장 성명	단장 학번	단장 학과·부
과학봉사단 기획단	손현기	21학번	수리과학부
새내기배움터 기획단	김택인	19학번	지구환경과학부

별첨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전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2009 제정
2012. 11. 02 개정
2013. 06. 03 개정
2014. 05. 20 개정
2015. 06. 01 개정
2015. 10. 29 개정
2016. 05. 23 개정
2016. 11. 29 개정
2017. 05. 22 개정
2017. 09. 04 개정
2017. 11. 27 개정
2018. 11. 26 개정
2019. 04. 01 개정
2019. 05. 30 개정
2019. 09. 23 개정
2020. 09. 24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자연대 학생총회
제3장 총투표
제4장 자연대 학생대표자 회의
제5장 회장단
제6장 운영위원회
제7장 학부·과 학생회
제8장 집행위원회
제9장 특별기구
제10장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1장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제12장 의사결정 및 집행의 원칙

제13장 재정

제14장 회장단 선거

제15장 시행세칙

제16장 회칙 제정 및 개정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라 한다. <개정 2013.6.3.>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연대 학우들이 학생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6.5.23.>

제3조의2 (회원 자격의 유지) <신설 2017.5.22>

(1) 본 회의 회원은 학교당국의 징계로 인해 제명되는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학생회장은 이를 해당 회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1. 징계 처분일로부터 14일 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2. 징계 처분일로부터 7일 내에 학생회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 2호에 의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회장은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원자격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이때, 학생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2020.09.24.>

(3) 전항에 의해 소집된 운영위원회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전항에 의해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이 연장된 회원이 더 이상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학대회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회원 자격 유지 중단을 의결할 수 있다. 단, 학생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자학대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5) 학생회장은 제3항과 제4항에 의한 의결 결과를 자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제3조의3 (복수전공/전공진입생의 준회원 인정) <신설 2019.5.30.> <개정 2020.09.24.>
자연과학대학 내 전공 복수전공생, 자유전공학부 소속 자연과학대학 전공 주전공생은 본회의 준회원 자격을 자연대 운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09.04.>

(3)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휴학 중인 회원도 적극적으로 학생 활동에 참가하려는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16.05.23.>

(5) 본회의 회원은 인종·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나이·사상·종교·신체적 차이·출신지 및 거주지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설 2017.5.22>

(6) 본회의 회원은 인종·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나이·사상·종교·신체적 차이·출신지 및 거주지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신설 2017.5.22.>

제4조의2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 <신설 2020.09.24.>

(1) 본회의 준회원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칙 제4조 (3)항, 자연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4조와 5조를 제외한 모든 회칙과 세칙에서 회원과 동등한 자격, 권리, 의무를 갖는다.

(2) 준회원의 자격은 제3조의3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단, 복수전공, 자연과학대학 전공진입이 취소될 시에는 자동으로 준회원 자격이 소멸된다.

(3) 준회원의 선거권은 일차적으로 제한된다, 단,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하는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4) 준회원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제5조 (구조)

(1)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대 학생총회를 비롯하여, 총투표, 자연대 학생대표자회의, 회장단, 운영위원회, 학부·과 학생회, 집행위원회, 특별 기구,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를 둔다. <문구수정 2017.11.27.> <문구수정 2020.09.24.>

(2)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자연대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장단기 특별기구, 여학생회 등을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6조 (의결) <신설 2017.11.27.> <문구수정 2020.09.24.>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자연대 학생총회 및 총투표, 자연대 학생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제2장 자연대 학생총회(이하 총회)

제7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신설 2016.5.23.>

제8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 (소집)

(1) 총회는 자연대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자연대 학생 대표자 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소집요구, 재학 중인 회원 1/10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자연대 학생회장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6.5.23.> <문구수정 2020.09.24.>

(2) 자연대 학생회장이 궐위 시 자연대 학생회장 권한 대행이 소집할 수 있다.

(3) 당기 자연대 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하였을 경우 재학 중인 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총회 주체자가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문구수정 2020.09.24.>

(4) 휴학 중인 회원이 1항, 3항의 연서에 참여한 경우 총회 재적수에 더한다. <신설 2016.5.23.>

제10조 (공고 및 의안 발의)

(1) 공고 : 총회가 열리기 2주 이전에 공고한다. <신설 2016.05.23.> <문구수정 2020.09.24.>

(2) 자연대 학생 대표자 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5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5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신설 2016.5.23.> <문구수정 2020.09.24.>

(3) 의안 공고 :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3.>

제11조 (역할 및 의결)

(1) 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2) 의결은 재학 중인 회원의 1/4 이상 출석,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6.5.23.> <문구수정 2020.09.24.>

(3)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5.23.> <문구수정 2020.09.24.>

(4)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신설 2016.5.23.>

(5) 총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또는 총회가 무산되었을 시에는 자연대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운영위원회 또는 자연대 학생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통해 총투표로 해당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문구수정 2020.09.24.>

제12조 (의장)

(1) 의장은 학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학생총회를 대표한다.

(2) 의장은 자연대 학생회장이 한다.

(3) 자연대 학생회장 궐위 시 권한 대행이 하며, 권한 대행도 선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총

회 자리에서 회원의 거수로 총회의 운영을 관장할 사람을 선출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신설 2016.05.23.>

총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학대회 시행세칙을 기반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또는 자학대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문구수정 2020.09.24.>

제3장 총투표

제14조 (지위) <신설 2016.5.23.>

- (1) 총투표는 총회 소집이 어렵거나 총회가 무산되었을 경우 총회를 대신하는 의결방식이다. <문구수정 2020.09.24.>
- (2) 총투표의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실시) <신설 2016.5.23.>

- (1) 학생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총회가 무산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자연대 학생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2) 학생회장은 총투표 실시 2주 이전에 공고한다. 단, 총회 무산 이후 총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는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안 발의) <신설 2016.5.23.>

- (1) 자연대 학생 대표자 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50인 이상의 회원은 총투표 5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0.09.24.>
- (2)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 <신설 2016.5.23.>

- (1) 총투표는 재학 중인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유효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0.09.24.>
- (3) 휴학 중인 회원은 총투표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투표한 경우 총투표 재적수에 더한다.

제18조 (시행세칙)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기반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또는 자학대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4장 자연대 학생 대표자 회의 (이하 자학대회)

제19조 (구성) 자학대회는 다음과 같이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구성한다.

(1) 자연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2) 각 전공, 학부·과의 학생회장 및 학번대표, 전공, 학부·과의 부학생회장 및 부학번대표가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한다. 단 한 학번에서 학번대표 또는 부학번대표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수인 경우 한 학번에서 대의원은 학번대표를 포함하여 최대 두 명까지 둘 수 있다. 각 전공 대표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할지의 여부는 자학대회 직전 자연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수정 2016.11.29.> [이하 '과, 학부'를 '학부·과'으로 문구수정 2019.05.30.]

(3)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 및 동아리 대표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단, 동아리의 대표가 자연대 학생회원이 아닌 경우 동아리 임원 중 자연대 학생회원 1인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4.5.20.> <개정 2017.11.27.>

(4)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단, 단위에서 대표로 인정된 자를 파견할 경우 자학대회에서 자격을 심의, 의결하고, 재적 대의원에 포함한다. <문구수정 2020.09.24.>

(5) <삭제 2014.5.20.>

(6) 대의원이 복수의 직책을 가질 경우 그중 한 직책으로만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이 때, 다른 직책에는 그 직책에 준하는 사람을 대리로 세울 수 있으며 자학대회 직전까지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2013.6.3.> <개정 2017.5.22.> <개정 2017.11.27.> <문구수정 2020.09.24.> <개정 2020.09.24.>

(7) 각 전공, 학부·과의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는 정규학번일 경우만 대의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3.6.3.>

(8)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를 세울 수 있다. 이 때 대리는 자학대회 직전까지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신설 2017.5.22.> <문구수정 2020.09.24.> <개정 2020.09.24.>

제20조 (지위) 자학대회는 자연대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21조 (역할)

(1) 본회의 회원 자격의 예외 규정을 심의,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2) 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한 시행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문구수정 2020.09.24.>

(3) 본회의 매 회기와 학기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4) 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권을 가진다.

(5)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6) 집행위원회와 특별기구의 사업을 검토, 승인한다.

(7)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회와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해임을 결정한다. <개정 2020.09.24.>

(8) 단체 가입 및 탈퇴를 결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단체 가입 및 탈퇴 결정을 사후 승인한다.

제22조 (소집 및 공고)

- (1) 정기 자학대회는 학기 초에 자연대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강 후 30일 이내 정기회의 소집이 없는 경우, 학생회장은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01>
- (2) 임시 자학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개정 2015.10.29.> <개정 2017.11.27.> <개정 2019. 04. 01> <문구수정 2020.09.24.>
- (3) 공고 : 정기 자학대회는 회의 1주일 전에, 임시 자학대회는 3일 전에 공고한다.

제23조 (개의 및 의결, 안건 상정, 회의진행)

- (1) 개의 : 자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0.09.24.>
- (2) 안건 상정 : 운영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자학대회의 경우 개회 하루 전까지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또한 자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문구수정 2020.09.24.> <개정 2020.09.24.>
- (3) 회의진행 : 자학대회 운영에 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문구수정 2020.09.24.>

제24조 (자학대회 의장)

- (1) 자격 : 학생회장이 한다. 단 회장 궐위 시 권한대행이 대신하며, 의장이 부재할 경우 회의 시 거수로 선출한다. <문구수정 2020.09.24.>
- (2) 역할 : 자학대회 개최를 공고하고 소집한다. 그리고 자학대회를 주재한다.

제25조 (탄핵)

- (1) 자학대회는 회장단, 집행위원장, 특별기구의 장이 본회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 행위를 하거나 회칙을 위배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이하 '집행위원회의 장'을 '집행위원장'으로 문구수정 2019.05.30.]
- (2) 탄핵은 재적 대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회장단 탄핵안에 대해서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 집행위원장, 특별기구의 장에 대해서는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제26조 (기구) 자학대회는 자학대회의 강화 발전과 그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학대회 의장 직속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장 회장단

제27조 (구성) 회장단은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제28조 (회장단의 지위) 회장단은 본회의 회원이며 본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5.23.>

제29조 (회장단의 자격 및 신분 보장) <신설 2016.5.23.>

- (1) 자연대 학생회장 및 자연대 부학생회장은 학부·과의 대표자 및 자연대 동아리 대표자 및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대표자와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 (2) 자연대 학생회장 및 자연대 부학생회장은 총회, 총투표, 자학대회 의결에 의한 탄핵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30조 (회장의 역할)

- (1) 본회의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한다.
- (2) 총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 (3) 자연대 학우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조직의 본회 대표자가 된다.
- (4) 자연대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 (5) 각 부서의 부장을 임명한다.

제31조 (부회장의 역할)

- (1) 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집행위원회를 주재한다.
- (2) 회장 궐위 및 부재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32조 (선출)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문구수정 2020.09.24.>

제33조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그해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19. 04. 01>

제34조 (궐위 및 부재 시)

- (1)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 재임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하며 3개월을 넘겼을 경우 제52조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 11. 26>
- (2) 회장과 부회장 중 1인이 궐위 또는 부재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 중 호선으로 수석 운영위원을 둘 수도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5조 (구성)

- (1) 자연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 (2) 각 학부·과의 학생회장, 단 학생회가 없을 경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대표자 1인 혹은 학번대표들 중 1인. 학번대표도 없을 경우 이는 재적인원에서 제한다. <개정 2014.05.20.> <개정 2016.11.29.>
- (3)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
- (4) 각 학부·과의 학생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해당 학부·과의 부학생회장 1인에게 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제36조 (지위) 자학대회를 잇는 유일한 상임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37조 (역할)

- (1) 자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한다.
- (2) 본회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자학대회에서 결정된 노선과 정책을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책임진다.
- (3) 장.단기 특별 기구를 신설한다.
- (4) 집행위원장에 대한 탄핵권고와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 (5) 임시 자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6) 단체 가입 및 탈퇴를 결정하고 자학대회에서 사후 승인한다.
- (7) 회기와 회기 사이에 선관위를 구성한다.
- (8) 회칙 제, 개정안 및 자학대회 안건을 발의하여 자학대회에 상정한다.
- (9) 집행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하며 단기 사업을 승인한다.
- (10) 예산 및 결산을 심의 검토하여 자학대회에 제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사후 이를 검토하고 인준 및 승인한다.
- (11)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전반 사항, 의결 안건 및 회의 결과를 공고한다.
- (12) 제3조의3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회원 자격 부여 여부를 심사한다. <신설 2019.5.30.>
- (13) 본회의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집행위원회와 자치단위로부터 활동을 보고받는다.
- (14) 기타 자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한다.

제38조 (소집 및 공고)

- (1) 소집 : 정기운영위원회는 1주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회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단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9.5.30.> <개정 2019.09.23.> <문구수정 2020.09.24.>
- (2) 공고 : 정기운영위원회는 당일 0시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개회 전에 공고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집 즉시 공고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제39조 (안건 상정과 개의 및 의결)

- (1) 안건 상정 : 정기 운영위원회 개회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 2016.11.29.> <문구수정 2020.09.24.>
- (2) 개의 및 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토론 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정기 운영위원회는 회원 전체에게 개방되며, 참관자는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언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제7장 학부.과 학생회

제40조 (회원) 본회 산하 각 학부·과의 모든 회원으로 하되, 각 학부·과 학생회의 회칙이나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41조 (구성 및 운영) 각 학부·과 학생회의 회칙이나 관례에 따른다.

제42조 (대표자) 각 학부·과 학생회의 회칙이나 관례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29.>

제8장 집행위원회 <개정 2016.11.29.>

제43조 (지위) 자학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44조 (구성 및 역할)

(1)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들로 구성된다. <개정 2016.11.29.>

(2) 본회의 예산운영과 운영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사무 관련 부서를 두며 이외에 기획사업, 정치활동, 학원 내 대학개혁의 업무, 학생회의 선전사업 등을 담당하는 집행 부서를 둔다. <문구 수정 2018. 11. 26> <문구수정 2020.09.24.>

(3) <삭제. 2012.11.02.>

제45조 (집행)

(1) 집행위원회는 매 학기별 장기 사업 및 계획을 자학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문구수정 2020.09.24.>

(2) 단기적으로 제출되는 매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문구수정 2020.09.24.>

(3) 승인 과정이 불가능할 시 운영위원회에서 사후 인준 과정을 거친다. <문구수정 2020.09.24.>

제46조 (선출) <개정 2016.11.29.>

(1) 집행위원장 :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자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 집행위원 : 공개모집에 의해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제47조 (탄핵 및 해임) <개정 2016.11.29.>

(1) 집행위원장 탄핵 및 해임 : 자학대회에서 대의원 1/2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해임을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0.09.24.>

(2) 집행위원 해임 : 집행위원장이 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제48조 (집행위원회의) <신설 2016.11.29.>

(1) 구성 :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들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20.09.24.>

(2) 소집 : 정기 집행위원회의를 1주일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3) 임시 회의 : 임시 집행위원회의의 소집은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집행위원장 전원 동의나 전체 집행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0.09.24.>

제9장 특별기구

제49조 (지위) 본회의 목적과 자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단기 기구이다.

제50조 (구성)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구성하고, 자학대회에서 승인한다.

제51조 (기구장 선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자학대회에서 인준한다.

제10장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신설 2018. 11. 26>

제52조 (구성)

(1) 학생회 선거가 무산됨과 동시에 제73조에 따른 보궐선거를 5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및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양자가 유고상황임과 동시에 제67조에 따른 보궐 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각 학부/과 학생회장으로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09.24.>

(2)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식 명칭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직무대행 0000(해당년도) 비상대책위원회', '0000(해당년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다. 약칭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같음한다.

2. 제9장에서 규정하는 특별기구의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특별기구'로 호칭한다.

(3)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문구수정 2020.09.24.>

(4)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위원이 아닌 본회의 회원 중 자연대 학생회장 혹은 자연대 부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53조 (임시위원장)

- (1) 임시위원장은 위원장단이 자학대회의 인준을 받기 전까지 자연대 학생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장단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임시위원장은 위원장단의 자학대회 인준을 위해 비대위 구성 20일 내로 자학대회를 열어야 한다.
- (3) 임시위원장은 위원장단이 자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 순간 임기가 종료된다.

제54조 (권한)

-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연대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칙/세칙의 '자연대 운영위원회', '자연대 운영위원',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부위원장' 으로 본다.

제55조 (업무)

-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의 재건을 제1목표로 하며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 (2)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자연대 학생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56조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2)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학대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다시 호선 또는 선임해야 한다.
- (3)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본회의 회원이 된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 (4)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또한 학생회장단 보궐선거로 회장단의 궐위 상태가 해소될 시에도 임기가 종료된다. <문구수정 2020.09.24.>

제57조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2)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제8장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학생

회장에 준하는 권한으로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10장 자연과학대학 학부/과 학생회장 연석회의 <신설 2017.5.22.> <삭제 2018. 11. 26>

제10장 연석회의가 비상대책위원회로 개정되어 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장 집행위원회 <삭제: 2016. 11.29>

제8장 집행부와 제10장의 집행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장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한 문구 수정은 2017. 5. 22. 완료되었습니다.

제11장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이하 자동연)

제58조 (지위)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개정. 2015.06.01.> <조항번호수정 2020.09.24.>

제59조 (구성)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칙에 의거하여 자동연 정식 등록 동아리 혹은 가등록 동아리로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11.29.> <문구수정 2020.09.24.> <조항번호수정 2020.09.24.>

제60조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 <조항번호수정 2020.09.24.>

(1)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회원 중에서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5.06.01>

(2) 자동연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자연대 운영위원 및 자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신설. 2015.06.01.>

제61조 (운영) <조항번호수정 2020.09.24.>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칙을 따른다. <개정. 2015.06.01>

(2) 자연대 학생회 회장단 선거 종료 후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가 부재할 경우, 자연대 학생회 회장단과 집행위원 중 2인을 지정, 본 학생회의 임기 동안 또는 자연대 동아리 연합회가 신설될 때까지 자연대 동아리의 총괄적인 관리를 맡긴다. <신설. 2012.11.06.>

(3) 집행위원회나 자연대 운영위원회에서 최대 1인까지 자동연 운영위원의 과반수 동의 하에 자동연 운영위원의 자격을 해당 자동연 회장의 임기동안 가질 수 있고 그 갱신이나 박탈은 자동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신설. 2015.06.01.>

제12장 의사결정 및 집행의 원칙

제62조 (의사결정의 원칙) 토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상호 비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최대한 하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조항번호수정 2020.09.24.>

제63조 (집행의 원칙)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하고 의사 결정된 사항을 전제로 풍부하고 각각의 실정에 의거한 집행을 수행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조항번호수정 2020.09.24.>

제13장 재정

제64조 (재정의 총당)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총학생회비 배분금, 수익금으로 총당한다. <개정 2017.09.04.> <문구수정 2020.09.24.> <조항번호수정 2020.09.24.>

제65조 (관리) 회장단의 감독 하에 재정에 대한 집행을 관리할 사무 관련 부서 소속 1인을 선정, 회계 관리자로 두며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5.06.01.> <문구 수정 2018. 11. 26> <조항번호수정 2020.09.24.>

제59조 <삭제 2015.06.01.>

제6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은 분기로 나눈다. <신설 2015.06.01.> <조항번호수정 2020.09.24.>

- (1) 12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 시 29일)까지 1분기 <개정 2019. 04. 01>
- (2)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분기 <개정 2019. 04. 01>
- (3)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분기 <개정 2019. 04. 01>
- (4) 특수한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의결 하에 분기의 시작과 종결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9.24.>

제67조 (예산의 편성 및 보고) <신설 2015.06.01.> <조항번호수정 2020.09.24.>

- (1) 예산은 경상비,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예의으로 나뉜다.
- (2) 경상비는 회장단,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물품과 학생회실에 필요한 각종 비품 및 보수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며, 경상비에 대한 집행은 회계 관리자가 담당한다. <문구수정 2020.09.24.>
- (3)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예산은 사업 및 행사가 시작되기 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동의 하에 예산을 집행한 후 검토하고 인준 및 승인한다. <문구수정 2020.09.24.>
- (4) <삭제 2016.05.23.>

제68조 (자치예산 지원기금) <신설 2015.06.01.> <삭제 2016.05.23.> <조항번호수정 2020.09.24.>

제69조 (결산보고) <신설 2015.06.01.>

- (1) 본회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를 거쳐 자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8. 11. 26>
- (2) 자학대회에 제출하는 결산안은 매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회장단의 감독 하에 회계관리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장 회장단 선거

제70조 (선거 시기)

- (1)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학대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11.29.> <개정 2017.09.04.> <개정 2019. 04. 01> <개정 2019.09.23.>
- (2) 당기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나 선거가 무효화되었을 때는 다음 선거 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0.09.24.>

제71조 (선거관리위원회) <조항번호수정 2020.09.24.>

-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둔다.
- (2)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 결정권한을 갖는다.
- (3) 선관위는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가 지명,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당기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회장단을 선출하지 못하여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단 선관위원의 부정행위로 해임된 경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거 기간 도중 그만두었을 경우, 2일 이내에 해당 인원수의 선관위원을 충원해야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 (4)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만장일치로 호선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과정을 거친다.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 (5)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선관위 회의를 거쳐 해임건의를 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문구수정 2020.09.24.>
- (6)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 1주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완료한다.
- (7) 선관위의 임기는 후보등록 1주 전부터 선거종료 1주 후까지로 한다. 선거종료는 당선 인준 또는 무효 결정까지이며,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당선을 인준한 후 선관위는 해소한다. <문구수정 2020.09.24.>
- (8) 선거 후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개표일 후 1주일 내에 선관위가 접수, 심의 처리한다. <문구수정 2020.09.24.>
- (9) 투개표, 유세준비 등의 제반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요원을 둘 수 있다.
- (10)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진행 상황 및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11) <삭제 2016.11.29.>

제72조 (선거방법) <조항번호수정 2020.09.24.>

- (1)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한다.
- (2)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회원이 된 후 1년 이상이 지나거나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개정 2016.11.29.> <개정 2017.09.04.> <개정 2019.09.23.>
- (3) 선거운동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갖는다.
- (4) 입후보자 중 재학중인 회원 과반수 득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휴학생이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개정 2016.11.29.>
- (5)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6)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73조 (보궐선거) 제70조제1항에 의한 선거가 무산될 시 이듬해 3월 중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본회의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하되 선거 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11.29.> <개정 2019. 04. 01> <문구수정 2020.09.24.> <조항번호 수정 2020.09.24.>

제15장 시행세칙

제74조 본회의 필요에 따라 각 단위의 운영에 대한 세칙을 둘 수 있다. <조항번호수정 2020.09.24.>

- (1) 각 단위 운영에 대한 시행세칙
 1. 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칙 : 회장단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2. 집행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칙 : 집행위원장의 제안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 (2) 기타 : 제정 및 개정 단위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16장 회칙 제정 및 개정

제75조 회칙 제정 및 개정은 매 학기 정기 자학대회를 통해 하고, 회기 중 제정 및 개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다음 임시 또는 정기 자학대회로 이월한다. <조항번호수정 2020.09.24.>

제76조 (발의) <개정 2020.09.24.>

- (1)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자학대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발의 <문구수정 2020.09.24.>
2. 운영위원회의 발의
3.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2) 회칙 제, 개정안은 자학대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3) 회칙 제, 개정안은 자학대회 1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0.09.24.>

제77조 (의결 및 공포) <조항번호수정 2020.09.24.>

- (1) 회칙 제정 및 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0.09.24.>
- (2) 자학대회 의장은 회칙 제정 및 개정 사안의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포한다.
- (3) 제정 및 개정된 회칙은 2일 이내에 공고한다.

부칙

제1조 위 회칙은 자학대회에서 의결된 후, 의장이 공포, 2일 이내에 공한 후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회원의 예외 규정) 부정 징계를 당하였을 경우 자학대회 심의를 거쳐 회원으로 한다.

제3조 선거 이외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자학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4조 (학생회비)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는 연 1회 1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9.04.>

제5조 2018 하반기 정기 자학대회에서 다룬 자연과학대학 선거 시기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신설 2018. 11. 26>